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제정 1999. 4. 3.	부장결재	국심	6011-220
개정 1999. 10. 30.	국장결재	국심	6601-621
개정 2000. 7. 6.	국장결재	국심	6011-294
개정 2001. 1. 5.	국장결재	국심	6011-14
개정 2001. 7. 2.	국장결재	국심	6011-229
개정 2002. 2. 15.	국장결재	국외	6011-123
개정 2002. 3. 18.	국장결재	국심	6011-115
개정 2002. 5. 14.	국장결재	국시	6011-42
개정 2002. 7. 2.	국장결재	국심	6011-303
개정 2003. 3. 28.	국장결재	국외	6011-217
개정 2004. 1. 27.	국장결재	국시	6011-14
개정 2004. 8. 27.	국장결재	국제	6011-591
개정 2005. 6. 30.	국장결재	국심	6011-386
개정 2005. 12. 29.	국장결재	국심	6011-925
(중략)			
개정 2015. 12. 31.	국장결재	외환시장팀	-457
개정 2016. 1. 19.	국장결재	외환심사팀	-61
개정 2016. 3. 31.	국장결재	외환심사팀	-322
개정 2018. 12. 31.	국장결재	외환심사팀	-381
개정 2019. 10. 22.	국장결재	국제총괄팀	-1193
개정 2021. 12. 28.	국장결재	외환심사팀	-355
개정 2022. 4. 19.	국장결재	외환시장팀	-138
개정 2023. 7. 26.	국장결재	자본이동분석팀	-453
개정 2021. 1. 3.	국장결재	외환건전성조사팀	- 8
개정 2024. 6. 10.	국장결재	자본이동분석팀	- 391
개정 2025. 1. 23.	국장결재	외환시장팀	- 55
개정 2025. 6. 24.	국장결재	국제총괄팀	- 79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절차는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외국환은행 등

제2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현물외화자산 및 부채와 선물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물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별표 1> 「금융기관 외화대차대조표 작성요령」의 외화자산과 부채로 한다. 다만, 리스관련 외화자산과 부채는 1998.7.1. 이후 취득한 것에 한한다.
2. 선물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별표 1> 「금융기관 외화대차대조표 작성요령」의 외국환계정과목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선물외화자산은 통화관련 파생금융상품거래 매입분, 신용 및 기타 파생금융상품거래중 통화관련 매입분으로 한다.
 - 나. 선물외화부채는 통화관련 파생금융상품거래 매도분, 신용 및 기타 파

생금융상품거래중 통화관련 매도분으로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통화옵션거래의 외국환포지션 산정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콜옵션 매입분 및 풋옵션 매도분은 선물외화자산으로, 콜옵션 매도분 및 풋옵션 매입분은 선물외화부채로 한다.

나. 동일날짜에 동일만기의 여러 개 통화옵션거래가 합성된 통화옵션거래를 동일한 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 실제로 발생하는 최대 외국환포지션만 계상한다.

제3조(외국환포지션한도의 산정) ① 세칙 제2-3조제4항의 대미달러환율은 전년도 외국환포지션 한도산정시 적용환율과 전년도 평균매매기준율을 평균한 환율로 한다.

② 외국환포지션 한도산정시 미화 1천불 미만은 절상한다.

제4조(별도한도의 인정신청) ① 세칙 제2-4조에 따라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환은행은 <별지 제3호 서식> 제4-1호 '종합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서' 및 제4-2호 '선물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서'를 한국은행 국제국장(이하 "국제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별도한도 인정신청 중 이월이익잉여금 환리스크헤지를 위해 별도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매년 결산일 1개월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국제국장은 별도한도의 인정여부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직전 영업일까지 통지한다.

제4조의2(대내외화사모사채) 세칙 제2-7조에 따른 "대내외화사모사채"는 국내에서 발행한 외화사모사채로서 외국환은행이 취득 또는 인수한 것을 말한다.

제4조의3(대출에 대한 심사와 사후관리) ① 시설자금의 대출 취급시에는 관계증빙서류 및 현물 또는 시설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계획된 용도 및 시기에 맞추어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시설자금 지원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② 외국환은행은 외화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1. 세칙 제2-9조에 따라 외화대출이 제한되는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
2. 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위조, 변조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외국환은행은 대출 이후 차주로부터 대출금 사용내용 및 관련 증빙서

류 등을 받아 용도대로 사용하였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4조의4(원화·위안화 시장 시장조성자 자격 요건) 세칙 제2-30조제1항의 원화·위안화 시장(원화·위안화 현물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장조성자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준수 요건 : 선정일로부터 과거 1년간 외국환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재무건전성 요건 :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따른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일 것
3. 신용등급 요건 : Standard & Poor's Ratings Services, Moody's Investors Service 및 Fitch Ratings(이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라 한다)가 평가한 신용등급 BBB(또는 Baa2)급 이상일 것. 단, 신용평가전문기관 중 한 개 기관만이 신용등급을 평가한 경우에는 동 기관이 책정한 신용등급을 적용하며, 두 개 기관만이 신용등급을 평가한 경우에는 낮은 신용등급을 적용한다. 신용평가전문기관 중 세 개 기관이 모두 신용등급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수의 기관이 책정한 신용등급을 적용하며, 세 개 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이 모두 다른 경우에는 이 중 중간에 해당하는 신용등급을 적용한다.

제4조의5(원화·위안화 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절차) ① <별지 제4호 서식> '원화·위안화 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신청서' 등이 포함된 차기 시장조성자 선정 계획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고한다.

② 세칙 제2-30조제2항에 따른 시장조성능력 평가는 거래실적 등 정량적 평가와 업무협조도 등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며, 국제국장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4조의6(원화·위안화 시장 시장조성자 호가제시 의무) ① 세칙 제2-32조제1항에 따른 원화·위안화 시장 시장조성자의 호가제시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속적 호가 : 직거래 환율 매도 및 매수 호가는 각각 1개 이상씩 상시 유지. 다만, 거래체결 후 또는 호가취소 후 일정 시간 이내에 다시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호가를 상시 유지한 것으로 봄
2. 경쟁적 호가 : 직거래 환율 호가의 매도·매입 스프레드는 달러화를 매개로 한 재정환율의 최우선 매도·매입 스프레드의 일정 배수 이내로 유지

② 제1항의 일정 시간 및 일정 배수는 별도로 정한다.

제4조의7(원화·미화 시장 선도은행 자격 요건) 세칙 제2-31조제1항에 따른 원화·미화 시장(원화·미화 현물환시장 및 스왑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선도은행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준수 요건 : 선정일로부터 과거 3년간 외국환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금융기관점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재무건전성 요건 :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따른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일 것
3. 신용등급 요건 : 신용평가전문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 A-(또는 A3)급 이상일 것. 단, 신용평가전문기관 중 한 개 기관만이 신용등급을 평가한 경우에는 동 기관이 책정한 신용등급을 적용하며, 두 개 기관만이 신용등급을 평가한 경우에는 낮은 신용등급을 적용한다. 신용평가전문기관 중 세 개 기관이 모두 신용등급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수의 기관이 책정한 신용등급을 적용하며, 세 개 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이 모두 다른 경우에는 이 중 중간에 해당하는 신용등급을 적용한다.
4. 최소 거래비중 요건 : 세칙 제2-31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기간 중 원화·미화 현물환시장 및 스왑시장 각각에서 전체 거래량 대비 2.0% 이상의 거래실적이 있을 것

제4조의8(원화·미화 시장 선도은행 거래실적 평가기준) 세칙 제2-31조제2항에 따른 원화·미화 시장 거래실적의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의9(선정 취소 등 절차) ① 세칙 제2-33조에 따라 원화·위안화 시장 시장조성자 또는 원화·미화 시장 선도은행 선정을 취소할 경우 해당 외국환은행에 취소 사유 및 취소 예정일자(긴급한 사유가 없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5일 이상 경과한 날로 정한다)가 기재된 서면으로 이를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외국환은행은 취소 예정일까지 국제국장에게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장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5조(제재 등 조치기준) 세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제국장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제재 등 조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1년간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 주의
2. 과거 1년간 2회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 경고
3. 과거 1년간 3회 위반 또는 위반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등록취소 등 제재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

제5조의2(제재심의위원회) ① 국제국장이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재심의위원회는 위법행위의 중대성, 고의 및 과실의 정도, 시정조치를 위한 노력 여부, 징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② 제1항의 제재심의위원회는 국제국 부국장, 국제기획부장, 외환업무부장, 국제총괄팀장, 외환시장팀장, 외환건전성조사팀장과 국제국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중 국제국 부국장은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며, 외환시장팀장은 간사로서 심의내용의 기록·유지 등 위원회 운영을 담당한다.

제6조(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검사절차) ① 세칙 제3-4조에 따른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서면검사 또는 실지검사를 실시할 경우 국제국장은 검사 실시기간, 대상업무·기간을 포함한 검사계획서를 검사 착수 전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검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칙 제3-4조제2항에 따른 실지검사를 실시할 경우 국제국장은 <별지 제3호 서식> 제2-1호 '검사 실시 명령서'를 검사원에게 발급하고, 검사원은 검사 착수 시점에 검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검사원은 검사대상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확인서 : 검사대상에 대한 사실 또는 위규 여부에 대한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제2-2호 '확인서'에 따라 요구하며,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이 기술되어야 한다. 이 경우 관련자 등에 대해 의견진술이 필요한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2. 질의서 : 검사대상 내용 또는 제출된 자료가 복잡하거나 불분명하여 관련 내용의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제2-3호 '질의서'에 따라 요구하며, 6하원칙에 따라 질의응답식으로 작성한다.
3. 관련 증빙자료 : 검사대상에 대한 사실의 객관적 입증자료로서 검사원의 판단에 따라 요구하며 검사대상기관 책임자의 원본대조필이 날인되

어야 한다.

- ④ 검사원은 검사기간 중 <별지 제3호 서식> 제2-4호 '검사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⑤ 검사원은 검사 종료 후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 제2-5호 '검사원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⑥ 검사원은 검사 종료 후 <별지 제3호 서식> 제2-6호 '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제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제국장은 검사 결과와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검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2(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검사사항) 제6조에 따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검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경우는 실지검사의 경우로 한정한다.

- 1.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신용공여 요건 유지 여부
- 2. 지침 제2-2조에 따른 등록요건 및 자격요건 유지 여부
- 3. 지침 제3-2조제3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한 외국환업무 수행 여부
- 4. 지침 제3-3조에 따른 업무용계좌를 통한 외국환업무 수행 여부
- 5. 지침 제4-1조에 따른 확인의무 이행 여부
- 6. 지침 제4-2조에 따른 보고의무 이행 여부
- 7. 서면검사 불응 또는 거짓 자료·정보 제출 등에 따른 위규 여부
- 8. 「외국환거래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상 의무 위반 여부
- 9. 그 밖의 법령·규정 및 지침, 한국은행 규정·명령 및 지시에 대한 준수 여부

제6조의3(대행기관 등 관계인에 대한 검사절차) ① 세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외환건전성조사팀장은 금융감독원과 검사원 구성, 검사 실시기간, 대상업무·기간 등을 협의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검사 계획 수립 시 세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국제국 소속 직원인 검사반장 1명과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서 검사원을 선정하여 검사반을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반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검사원의 업무분장
- 2. 검사일지 및 검사원 보고서 확인, 검사 결과 보고서 작성 총괄
- 3. 관련 자료·정보 제출 독려

4. 금융감독원 소속 감사원과의 업무협조

④ 제1항에 따른 공동검사를 계속 진행하기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사반장은 지체 없이 국제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동검사 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국제국장은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대상기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 결과 보고는 <별지 제3호 서식> 제2-7호 '시정조치 결과 보고서'를 따른다.

⑥ 제1항에 따른 공동검사를 실시할 경우 검사계획서 통보, 검사 실시 명령서 교부, 확인서 및 질의서 등 자료 제출 요구, 검사일지 및 감사원 보고서 작성, 검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보고, 검사 결과 등 통보 등 검사 절차에 관한 제6조를 준용한다. 세칙 제3-5조제2항에 따른 단독 검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의4(대행기관 등 관계인에 대한 검사사항) 제6조의3에 따라 대행기관 등 관계인에 대하여 검사할 사항은 제6조의2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와 같다.

제7조 <삭 제>

제8조 <삭 제>

제4장 외국환중개회사

제9조(제재 등 조치기준) 세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국제국장이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 등 조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당 조치를 할 때에는 제5조의2에 따른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과거 1년간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 주의
2. 과거 1년간 2회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 경고
3. 과거 1년간 3회 위반 또는 위반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인가취소 등 제재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

제10조(검사절차) 세칙 제4-7조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서면검사 또는 실지검사를 실시할 경우 검사계획서 통보, 검사 실시 명령서 교부, 확인서 및 질의서 등 자료 제출 요구, 검사일지 및 감사원 보고서 작성, 검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보고, 검사 결과 등 통보 등 검사절차에 관한 제6조를 준용한다.

제11조(검사사항) 제10조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 검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입자본금 충족 여부
2. 외국환중개업무 및 이에 관한 보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3. 외국환중개업무에 대한 지식·경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4. 불공정 중개업무 여부
5. 자기명의 거래 여부
6. 매매기준율 및 재정된 매매기준율 고시의 적정 여부
7. 그 밖의 법령·규정 및 지침, 한국은행 규정·명령 및 지시에 대한 준수 여부

제12조 <삭 제>

제12조의2 <삭 제>

제12조의3 <삭 제>

제12조의4 <삭 제>

제5장 외국환거래 신고등

제1절 신고등의 신청 및 접수

제13조(신고등의 신청) ① 세칙 제5장의 허가, 신고수리 또는 신고(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대리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행위 또는 거래에 관한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명으로 신청하거나 대표자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신고등의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고등은 온라인 외환심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 외환심사시스템을 통한 신고등의 신청·접수·보완·관리 등 업무처리하는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신고등의 신청을 하려는 자 또는 신청인에게 전자적 방법을 통해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제14조(신청서의 접수) ① 신고등의 신청서는 신고등의 종류별로 신청순서에 따라 외국환거래 신고등 접수·처리부(이하 “접수·처리부”라 한다)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기획 및 조정 에 관한 규정 시행절차」 제1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신고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의 경미한 하자 등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없다.

제15조(신청서의 보완) ① 접수한 신청서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 구두, 전화, 팩시밀리, 컴퓨터통신 등으로 보완이나 보정(이하 “보완”이라 한다)을 요청하여야 하며 접수·처리부에 보완요청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제1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서류의 보완을 하지 않을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서류의 보완을 하지 않거나 반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할 수 있다.

제2절 신고등의 처리절차

제16조(처리기준) 세칙 제5-3조에 따른 신고등의 항목별 세부심사기준, 전결(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분, 처리기간 및 위임지역본부 등은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17조(전결구분의 공통사항) ① 팀 조직이 없는 지역본부의 경우 <별표 2>의 전결구분 중 팀장 전결은 부분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본부장보충 선임자 전결로 한다.

② 신고등에 대한 내용변경의 전결권 구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액, 거래당사자 변경 등 주요내용 변경시 신규 신고등과 동일
2. 계약기간 연장 등 기타 경미한 내용변경시 신고등 항목별 하위 전결권자

제18조(허가서등의 교부) ① 제13조에 따라 신고등을 한 경우에는 접수·처리부에 기재한 후 허가서, 신고수리서 또는 신고필증(이하 “허가서등”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외환심사시스템을 통한 신고등의 경우 동 시스템을 통해 허가서등을 교부하거나 허가서등의 발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신고등을 받은 자가 허가서등에 표기된 금액, 기타 내용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서등을 무효로 한다.
- ③ 이 장에 따른 신고등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계약서 등 주요서류 원본에 신고등의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④ 이 조에 따른 허가서등의 교부를 위해 전자적 방법을 통해 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유효기간) 허가서등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다만, 신용장(Letter of Credit, 이하 “L/C”라 한다.) 추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이를 초과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발급할 수 있다.

- 제20조(관리 등)** ① 국제국장 및 각 지역본부장은 신고등의 처리내역을 외환전산망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 ② 각 지역본부장은 제1항의 신고등의 처리내역을 매월별로 익월 10일까지 외환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3절 외국환거래 사후관리

제21조(사후관리 주체 및 대상) ① 세칙 제5-2조에 따른 사후관리는 외국환거래의 신고등의 업무를 처리한 국제국장 및 제16조에 따라 신고등의 업무를 위임받은 각 지역본부장이 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등을 한 외국환거래가 법령의 규정대로 실행되었는지 여부 및 신고등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22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외국환거래 당사자는 국제국장 또는 각 지역본부장이 요구하는 경우 사후관리에 필요한 외국환거래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외국환거래 당사자는 국제국장 및 각 지역본부장이 사후관리업무 수행시 거래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는 경우 이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위규사항 통보 등) ① 국제국장 및 각 지역본부장은 외국환거래 신고등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를 담당하는 기관에 동 위반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 ② 각 지역본부장이 제1항의 통보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국제국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제6장 외국환거래 검사

제24조(검사절차) 세칙 제6-2조에 따른 금융기관 및 부담금납부의무자,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경우 검사계획서 통보, 검사 실시 명령서 교부, 확인서 및 질의서 등 자료 제출 요구, 검사일지 및 검사원 보고서 작성, 검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보고, 검사 결과 등 통보 등 검사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를, 금융감독원 시정조치 요구 및 결과 보고에 관하여는 제6조의3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제25조(검사사항) 제24조에 따라 금융기관 및 부담금납부의무자,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 등에 대한 검사는 검사대상기관의 법령·규정 및 지침, 한국은행 규정·명령 및 지시에 대한 준수 여부 사항을 검사한다.

제26조 <삭 제>

제7장 외국환거래 보고 대상자

제27조(검사절차) 세칙 제7-1조에 따른 보고 대상자(외국환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경우 검사계획서 통보, 검사 실시 명령서 교부, 확인서 및 질의서 등 자료 제출 요구, 검사일지 및 검사원 보고서 작성, 검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보고, 검사 결과 등 통보 등 검사절차에 관한 제6조를 준용한다.

제28조(검사사항) 제27조에 따른 보고 대상자에 대한 검사는 보고 대상자의 보고사항을 검사한다.

제29조(제재 등 조치기준) 세칙 제7-2조에 따라 국제국장이 보고 대상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 등 조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고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보고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연하는 경우 : 경고
2. 고의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고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또는 제1호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 경위서 제출 요구
3. 관련 서류의 허위작성, 위조·변조, 중복사용 또는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 등의 정지 또는 제한

제30조(외환거래심의위원회) ① 국제국장이 제29조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외환거래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외환거래심의위

원회는 위규행위의 중대성, 위규금액의 규모, 여러 위규행위의 경합 여부, 위규행위 이후 보완 또는 시정조치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② 제1항의 외환거래심의위원회는 국제기획부장, 외환분석부장, 외환업무부장, 국제총괄팀장, 외환시장팀장, 자본이동분석팀장, 외환정보팀장, 외환심사팀장, 외환건전성조사팀장으로 구성한다.

제8장 보고 등

제31조(보고서 등) 세칙 제8-1조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보고서를 국제국장 또는 각 지역본부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거래규정」 제10-14조에 따른 외환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32조 <삭 제>

제33조(대미화 환산율) ① 보고당사자가 보고서 작성을 위해 미화 이외 통화를 미화로 환산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식에 따라 매일 산출한 외국통화의 대미화 환율을 적용한다.

1. 위안화 : 위안화의 대미화 환산율 = $\frac{\text{위안화의 매매기준율(원화표시)}}{\text{미화의 매매기준율(원화표시)}}$
2. 세칙 제4-3조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의 장이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산출 통보하는 통화 :

$$\text{해당 통화의 대미화 환산율} = \frac{\text{해당 통화의 재정된매매기준율(원화표시)}}{\text{미화의 매매기준율(원화표시)}}$$

3. 그 밖의 통화 : 각 행에서 입수 가능한 최근일의 대미화 환율

② 제1항에 따른 대미화 환산율은 소수점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이 때 일본·베트남·인도네시아 통화는 100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제34조(사본의 보관) 제31조의 보고당사자는 보고서의 사본을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5조 <삭 제>

부 칙 <1999. 4. 3.>

- ① (시행일) 이 절차는 1999. 4. 1.부터 시행한다.
- ② (외국환관리업무취급절차의 폐지) 「외국환관리업무취급절차」는 이 절차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중 략)

부 칙 <2008. 3. 20.>

- ① (시행일) 2008. 3. 25일부터 시행한다.
- ② (기한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8월 10일 이전에 행한 외화대출중 세칙 제2-9조에 해당하는 외화대출로서 만기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도래하는 외화대출의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간 세칙 제2-9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2008. 9. 10.>

이 절차는 2008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 18.>

이 절차는 2009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9. 18.>

이 절차는 2009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 26.>

이 절차는 2009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8. 3.>

제1조(시행일) 이 절차는 2010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금융기관 외화대차대조표 작성요령', <별지 2> '가.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보고서' 중 '중소제조업체 국내시설자금 대출한도액 운용 보고서' 및 '나. 외환통계 보고서'는 2010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 제4조제1항에 따른 별도한도 인정신청중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제 2010-14호)의 고시전 거래로 인한 한도초과분에 대해 별도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외국환은행은 2010년 8월 31일까지 별도한도를 신청하여야 하며, 국제국장은 별도한도의 인정여부를 이 절차 시행 15일전까지 통지한다.

② 제1항의 별도한도를 인정받은 외국환은행은 별도한도 인정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인정기간 종료일 1개월전까지 별도한도를 재신청하여야 하며, 국제국장은 별도한도 인정여부를 인정기간 종료 15일전까지 통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별도한도를 인정받은 외국환은행은 자기자본 변동으로 별도한도 증감이 발생할 경우 자기자본이 변동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별도한도를 재신청하여야 하며, 국제국장은 별도한도의 증감여부를 재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별도한도를 인정받은 거래 중 만기가 도래한 거래는 만기일이 속한 분기말에 별도한도에서 제외된다.

⑤ 제1조 및 이 절차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물환포지션 제도 도입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 환리스크헤지를 위한 선물환포지션 별도한도를 최초로 인정받고자 하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별도한도를 신청하여야 하며, 국제국장은 별도한도의 인정여부를 이 절차 시행 15일전까지 통지한다.

부 칙 <2010. 12. 13.>

이 절차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4. 5.>

이 절차는 2011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6. 1.>

제1조(시행일) 이 절차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 제4조제1항의 별도한도 인정신청 중 「외국환거래규정」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 조치와 관련하여 2011년 6월 1일 전 거래로 인한 한도초과분에 대해 별도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외국환은행은 2011년 6월 10일까지 별도한도를 신청하여야 하며, 국제국장은 별도한도의 인정여부를 2011년 6월 24일까지 통지한다.

② 제1항의 별도한도를 인정받은 외국환은행은 별도한도 인정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인정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한도를 재신청하여야 하며, 국제국장은 별도한도 인정여부를 인정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통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별도한도를 인정받은 외국환은행은 자기자본 변동으로 별도한도 증감이 발생할 경우 자기자본이 변동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별도한도를 재신청하여야 하며, 국제국장은 별도한도의 증감여부를 재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별도한도를 인정받은 거래 중 만기가 도래한 거래는 만기일이 속한 분기말에 별도한도에서 제외된다.

부 칙 〈2011. 7. 15.〉

이 절차는 2011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9. 6.〉

이 절차는 201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4. 27.〉

이 절차는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0. 18.〉

이 절차는 2012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28.〉

제1조(시행일) 이 절차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 제4조제1항의 별도한도 인정신청 중 「외국환거래규정」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조정을 위한 통첩 시행(2012년 11월 28일)과 관련하여 2012년 11월 28일 전 거래로 인한 한도초과분에 대해 별도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외국환은행은 2012년 12월 14일까지 별도한도를 신청하여야 하며, 국제국장은 별도한도의 인정여부를 2012년 12월 21일까지 통지한다.

② 제1항의 별도한도를 인정받은 외국환은행은 별도한도 인정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인정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한도를 재신청하여야 하며, 국제국장은 별도한도 인정여부를 인정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통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별도한도를 인정받은 외국환은행은 자기자본 변동으로 별도한도 증감이 발생할 경우 자기자본이 변동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별도한도를 재신청하여야 하며, 국제국장은 별도한도의 증감여부를 재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별도한도를 인정받은 거래 중 만기가 도래한 거래는 만기일이 속한 분기말에 별도한도에서 제외된다.

부 칙 〈2013. 6. 28.〉

이 절차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9. 11.〉

이 절차는 2013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 20.〉

제1조(시행일) 이 절차는 2014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지대상 대이란 교역 등의 적용 유예) <별표 2-2>‘금지대상 대이란 교역·투자 및 해외건설 활동’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은 2014년 1월 20일부터 2014년 7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한다. 다만, 한국무역협회의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부 칙 〈2014. 12. 23.〉

이 절차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 7.〉

이 절차는 2015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6. 30.〉

이 절차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31.〉

이 절차는 201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 19.〉

이 절차는 2016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3. 31.〉

이 절차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31.〉

이 절차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22.〉

이 절차는 2019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28.〉

이 절차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20.〉

이 절차는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7. 26.〉

이 절차는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 3.〉

제1조(시행일) 이 절차는 2024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화·미화 시장 선도은행 거래실적 평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4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에 선정하는 원화·미화 시장 선도은행은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을 평가대상기간으로 한다(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은 종전 규정에 따라, 7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은 개정규정에 따라 각각 평가하고 각 기간의 평가점수를 외환시장 개장일수로 가중평균한다).

부 칙 〈2024. 6. 10.〉

이 절차는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 23.〉

제1조(시행일) 이 절차는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화·미화 시장 선도은행 거래실적 평가기준 적용대상 및 경과조치) 2025년 1월에 선정하는 원화·미화 시장 선도은행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을 평가대상기간으로 한다. 단, 1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은 종전 규정에 따라, 8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은 개정규정에 따라 각각 평가하고 각 기간의 평가점수를 외환시장 개장일수로 가중평균하여 평가한다.

부 칙 〈2025. 6. 24.〉

이 절차는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금융기관 외화대차대조표 작성요령

금융기관 외화대차대조표 작성요령

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화대차대조표에 포함될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 계정과목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I. 외화자산계정

1. 외국통화
2. 외화예치금
 21. 외화타점예치금
 22. 외화정기예치금
 23. 외화기타예치금
3. 외화증권
 31. 외화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32. 외화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33. 외화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34. 외화지분법적용투자주식
4. 외화대여유가증권
 41. 외화대여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42. 외화대여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43. 외화대여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5. 매입외환
 51. 수출환어음
 511. 일람출급
 512. 기한부
 52. 외화표시내국신용장어음
 53. 약속어음(P-Note)
 54. 기타
6. 미결제외환
7. 외화대출금
 71. 외화대출
 72. 외화표시원화대출
 73. 전대차관자금대출
 731. 금융기관전대
 732. 민간기업대출
 733. 기타전대대출
 74. 기타

- 8. 은행간외화대출
 - 81. 외화타점대
 - 82. 외화콜론
 - 83. 은행간외화대여금
 - 9. 외화사모사채
 - 10. 내국수입유산스
 - 101. 국내본점
 - 102. 해외지점
 - 103. 해외은행
 - 104. 타외국환은행
 - 마) 기타
 - 11. 외화리스자산
 - 111. 외화운용리스
 - 112. 외화선급운용리스
 - 113. 외화금융리스
 - 114. 외화선급금융리스
 - 115. 기타
 - 12. 외화신용카드채권
 - 121. 신용카드대급금
 - 122. 기타
 - 13. 외화직불카드채권
 - 14.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
 - 15. 외화본지점
 - 151. 국내본지점
 - 152. 국외본지점
 - 1521. 갑계정
 - 15211. 갑갑계정
 - 15212. 갑을계정
 - 1522. 을계정
16. 국외고정자산
17. 기타외화자산
 - 171. 외화미수금
 - 172. 외화미수수익
 - 173. 외화가지급금
 - 174. 외화선급비용
 - 175. 외화미수미결제현물환
 - 176. 기타
 - 1761. 자본조정[참조항목]

- 1762. 기타
- 18.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수
- 19. 외화수출팩토링채권
- 20. 외화출자전환채권
- 21. 외화파생상품자산
 - 211. 이자율관련
 - 2111. 이자율선도
 - 2112. 이자율스왑
 - 2113. 매입이자율옵션
 - 212. 통화관련
 - 2121. 매입통화옵션
 - 213. 주식관련
 - 2131. 주식선도
 - 2132. 주식관련스왑
 - 2133. 매입주식관련옵션
 - 214. 신용관련
 - 2141. 신용파생상품스왑
 - 2142. 매입신용파생상품 옵션
 - 2143. 기 타
 - 215. 기타파생상품자산
- 22. 역외외화자산
 - 221. 역외외화예치금
 - 2211. 비거주자
 - 2212. 타역외계정
 - 222. 역외외화대출금
 - 2221. 비거주자
 - 2222. 타역외계정
 - 223. 역외외화증권
 - 2231. 역외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2232. 역외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2233. 역외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2234. 역외지분법적용투자주식
 - 224. 역외외화본지점
 - 225. 역외환매조건부채권매수
 - 226. 역외파생상품자산
 - 227. 역외기타외화자산
- 23. 할인어음(리스)
- 24. 외화특별계정자산(보험)

- 25. 외화현재가치할인차금(-)
- 26. 외화대손충당금(-)

II. 외화부채계정

- 1. 외화예수금
 - 11. 외화당좌예금
 - 12. 외화보통예금
 - 13. 외화별단예금
 - 14. 외화통지예금
 - 15. 외화정기예금
 - 16. 외화정기적금
 - 17. 외국환평형기금예수금(BOK)
- 2. 매도외환(매도수익증권)
- 3. 미지급외환
- 4. 외화콜머니
 - 41. 한국은행(외평기금 포함)
 - 42. 금융기관
- 5. 외화차입금
 - 51. 외화타점차
 - 511. 차월
 - 512. 메일크레디트
 - 513. 리파이낸스
 - 52. 은행차입금
 - 521. 한국은행차입금
 - 522. 은행차입금
 - 53. 외화표시원화차입금
 - 54. 전대차입금
 - 541. 정부차입금
 - 542. 국내금융기관차입금
 - 543. 국외차입금
- 55. 외화수탁금
- 56. 기타
- 6. 외화발행금융채권:액면금액
 - (6-1. 외화채권할인발행차금)(-)
 - (6-2. 외화채권할증발행차금)(+)
- 7. 외화리스부채
 - 71. 외화전대리스채무(금융)
 - 72. 외화전대리스채무(선수금)

- 73. 외화전대운용리스채무
 - 74. 기타
 - 8. 외화수입보증금
 - 81. 수입화물선취보증금
 - 82. 파생금융상품계약이행보증금
 - 83. 외화리스보증금
 - 84. 기타
 - 9. 외화직불카드채무
 - 10. 외화수출팩토링미지급금
 - 11.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
 - 12. 외화본지점
 - 121. 국내본지점
 - 122. 국외본지점
 - 1221. 집계정
 - 12211. 갑집계정
 - 12212. 갑을계정
 - 1222. 을계정
13. 기타외화부채
 - 131. 외화미지급금
 - 132. 외화가수금
 - 133. 외화선수수익
 - 134. 외화미지급비용
 - 135. 외화미지급미결제현물환
 - 136. 외화지급보증충당금
 - 137. 기타
 - 1371. 자본조정[참조항목]
 - 1372. 기타
14. 외화파생상품부채
 - 141. 이자율관련
 - 1411. 이자율선도
 - 1412. 이자율스왑
 - 1413. 매도이자율옵션
 - 142. 통화관련
 - 1421. 매도통화옵션
 - 143. 주식관련
 - 1431. 주식선도
 - 1432. 주식관련스왑
 - 1433. 매도주식관련옵션

- 144. 신용관련
 - 1441. 신용파생상품스왑
 - 1442. 매도신용파생상품 옵션
 - 1443. 기 타
- 145. 기타파생상품부채
- 15. 역외외화부채
 - 151. 역외외화예수금
 - 1511. 비거주자
 - 1512. 타역외계정
 - 152. 역외외화차입금
 - 1521. 비거주자
 - 1522. 타역외계정
 - 153. 역외외화발행금융채권
 - 154. 역외외화본지점
 - 155. 역외환매조건부채권매도
 - 156. 역외파생상품부채
 - 157. 역외기타외화부채
- 16. 외화현재가치할인차금(-)

III. 난외계정

- 1. 확정외화지급보증
 - 11. 수입신용장관련외화지급보증
 - 111. 인수
 - 112. 수입화물선취보증
 - 12. 기타외화보증
 - 121. 수입(외화)팩토링인수
 - 122. 외화신용파생상품보증매도
 - 123. 차관인수
 - 124. 기타외화지급보증
- 2. 미확정외화지급보증
 - 21. 수입신용장발행
 - 22. 차관인수보증
 - 23. 기타외화보증
- 3. 배서어음
 - 31. 담보배서어음
 - 32. 무담보배서어음
- 4. 외화약정
 - 41. 외화대출약정

- 42. 역외외화대출약정
- 43. 외화유가증권인수약정
- 44. 역외외화유가증권인수약정
- 45. 외화유가증권매입계약
- 46. 기타외화약정
- 5. 외화대손상각채권
- 6. 외화신용파생상품보증매입
- 7. 외화환매조건부대출채권매각
- 8. 외대어음해외매각

IV. 파생상품거래

1. 통화관련

11. 통화선도

- 111. 통화선도(차액결제제외)
- 112. 통화선도(차액결제)

12. 외환스왑

- 121. 외환스왑(차액결제제외)
- 122. 외환스왑(차액결제)

13. 통화스왑

- 131. 통화스왑(차액결제제외)
- 132. 통화스왑(차액결제)

14. 통화선물

15. 통화옵션

- 151. 콜옵션
- 152. 풋옵션

2. 이자율관련

21. 이자율선도

22. 이자율선물

23. 이자율스왑

24. 이자율옵션

- 241. 콜옵션
- 242. 풋옵션

3. 주식관련

31. 주식선도

32. 주가지수선물

33. 주식관련스왑

34. 주식관련옵션

- 341. 콜옵션

342. 풋옵션

4. 신용관련

- 41.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
- 42. 신용디폴트스왑(Credit Default Swap)
- 43. 토탈리턴스왑(Total Return Swap)
- 44. 신용부도옵션(Credit Default Option)
 - 441. 콜옵션
 - 442. 풋옵션
- 45. 합성담보부채권(synthetic CDO)
- 46. 기타신용파생상품

5. 기타파생상품관련

- 51. 기타파생상품관련 선도
- 52. 기타파생상품관련 선물
- 53. 기타파생상품관련 스왑
- 54. 기타파생상품관련 옵션
 - 541. 콜옵션
 - 542. 풋옵션

나. 외국환은행은 “가.”에서 정한 계정과목중 대외(국외) 및 대내(국내), 장기 및 단기 구분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이를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 본 보고서의 각 계정과목에 대한 기타 회계처리는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4-1>을 준용한다.

<별표 2> 신고등 업무 처리기준

신고등 업무 처리기준

I. 허가·신고수리

항 목	세 부 심 사 기 준	전결구분	처리기간 ^{주)}	위임 지역본부
1. 금융제재대상자와의 지급등에 대한 허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 제3조)	'금융제재대상자와의 지급등에 대한 허가 심사기준' <별표 2-1> 참조	부 장	20일 이내	—
2.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등에 따른 신고수리 (규정 제9-39조제4항)	1. 투자금액 및 계획의 적정성 여부 2.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여부 3. 규정 제9-38조에 따른 그 밖의 신고수리요건 구비 여부	팀 장	5일 이내	전지역본부
3. 해외지점에 대한 예외적 영업기금 지급 신고수리 (규정 제9-19조제3항 단서)	1. 국내 본사의 재무상태 및 해외지점의 영업활동 필요성 2. 당해 해외지점에 대한 영업기금 지급의 불가피성 여부 3. 영업계획과 영업기금 송금액의 부합여부 4. 영업기금 송금액 재원의 적정성	"	"	—
4. 해외지점의 제한된 영업활동 신고수리 (규정 제9-22조제1항)	1. 당해 행위나 거래가 외화 획득, 국제수지 개선 등을 위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지의 여부 2.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그 행위나 거래가 당해 해외지점의 활동상 필요한지의 여부	"	"	—

주) 처리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서류의 보완,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 및 공휴일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II. 신고

항 목	확 인 사 항	전 결 구 분	처리기간 ^{주)}	위임 지역본부
1. <삭 제>	—	—	—	—
2. 상계에 의한 지급 등 방법 신고 (규정 제5-4조제3항)	1. 당행 신고대상인지 여부 2. 상계대상 채권·채무 성립 여부 3. 거래당사자간 합의서 4. 기타 필요한 사항	팀장보	2일 이내	"
3.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 방법 신고 (규정 제5-8조제1항)	1. 당행 신고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수출입계약서 3. 기타 필요한 사항	"	"	"
4. 제3자 지급등에 의한 지급등 방법 신고 (규정 제5-10조제1항)	1. 당행 신고대상인지 여부 2. 거래당사자간 합의서 3. 기타 필요한 사항	"	"	"
5.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등 방법 신고 (규정 제5-11조제3항, 제7-3조제2항)	1. 당행 신고대상인지 여부 2. 관련 계약서 3. 당해 지급·수령 상대방과 거래 상대방의 일치 여부 4. 기타 필요한 사항	"	"	"
6. 자금통합관리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 (규정 제7-46조제2항)	1. 당행 신고대상인지 여부 2. 자금통합관리의 필요성 여부 3. 관련 계약서 4. 기타 필요한 사항	팀 장	5일 이내	—

주) 처리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서류의 보완,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 및 공휴일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항 목	확 인 사 항	전 결 구 분	처 리 기 간	위 임 지역분부
7. 국내 및 해외 예금, 신탁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 (규정 제7-6조제2항, 제7-11조제3항)	1. 당행 신고대상인지 여부 2. 예금·신탁 등 거래행위의 타당성 여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	3일 이내	전지역본부
8. 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 및 외화증권 발행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 (규정 제7-14조제4항, 제7-22조제2항)	1. 당행 신고대상인지 여부 2. 관련 계약서 3.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 제공여부 4. 기타 필요한 사항	"	5일 이내	"
9.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 및 원화 대출거래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 (규정 제2-6조제1항, 4항, 5항, 제7-16조제1항)	1. 당행 신고대상인지 여부 2. 관련 계약서 3.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 제공여부 4. 원화대출시 300억원 초과 여부 5. 기타 필요한 사항	"	"	"
10.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무의 보증 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 (규정 제2-8조제2항, 제7-19조, 제7-46조제2항)	1. 당행 신고대상인지 여부 2. 관련 계약서 3. 주채무계열소속 30대계열기업체의 단기외화차입에 대한 보증 및 비거주자간 거래에 대한 보증, 역외금융회사의 채무에 대한 직·간접보증에 해당되는지 여부 4.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채권 확보여부 5. 기타 필요한 사항	"	3일 이내	"
11. 거주자간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대외지급수단 매매 신고 (규정 제2-2조제3항, 제2-3조제1항, 제7-20조제2항, 제7-21조제3항, 제9-43조제2항)	1. 당행 신고대상인지 여부 2. 관련 계약서 3. 기타 필요한 사항	팀장보	"	"
1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 (규정 제7-21조제3항)	1. 당행 신고대상인지 여부 2. 관련 계약서 3. 기타 필요한 사항	팀 장	"	"
13.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취득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 (규정 제7-31조제2항)	1. 당행 신고대상인지 여부 2. 관련 계약서 3. 교환방식 증권취득의 경우 교환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4. 기타 필요한 사항	팀 장	5일 이내	전지역본부

항 목	확 인 사 항	전 결 구 분	처 리 기 간	위 임 지 역 분 부
14. 비거주자의 거주자로부터 증권의 취득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 (규정 제7-32조제3항)	1. 당행 신고대상인지 여부 2. 관련 계약서 3. 기타 필요한 사항	"	3일 이내	"
15.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 (규정 제7-40조제2항)	1. 당행 신고대상인지 여부 2. 관련 계약서 3. 과도한 옵션프리미엄 등 선금수수료의 지급·기존거래의 가격이전거래·타조항 신고회피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4. 기타 필요한 사항	"	5일 이내	부산본부, 강남본부
16.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등에 대한 신고 (규정 제9-42조제3항)	1. 당행 신고대상인지 여부 2. 관련 계약서 3. 기타 필요한 사항	"	3일 이내	전지역 본부
17.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기타 자본거래 신고 (규정 제7-46조제2항)	1. 당행 신고대상인지 여부 2. 관련 계약서 3. 기타 필요한 사항	"	"	"
18. 비거주자와 다른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자본거래 신고 (규정 제7-48조제2항)	1. 당행 신고대상인지 여부 2. 관련 계약서 3. 기타 필요한 사항	"	"	—
19. 거주자의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 (규정 제9-15조의2)	1. 당행 신고대상인지 여부 2. 관련 계약서 3. 기타 필요한 사항	"	"	—

<별표 2-1> 금융제재대상자와의 지급등에 대한 허가 심사기준

「금융제재대상자와의 지급등에 대한 허가 심사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 제3조에 따른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심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침”이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기획재정부장관 고시)을 말한다.
2. “금융제재대상자”란 지침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지급등”이란 지급 및 영수를 말한다.
4. “허가”란 지침 제3조 제1항에 따른 금융제재대상자와의 지급등에 대한 허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거주자(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금융제재대상자와 지급등을 할 수 없다.

② 한국은행은 지급등의 원인이 되는 거래의 품목 또는 행위가 지침이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거래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허가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주무부장관의 허가 추천) 한국은행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장관이 지급등의 불가피성 등을 소명하는 공문으로 허가추천을 하는 거래의 지급등에 대해서는 허가를 할 수 있다.

<별표 3> 원화·미화 시장 선도은행 거래실적 평가기준

원화·미화 시장 선도은행 거래실적 평가기준 ¹⁾²⁾³⁾

은행별 총점_i = ∑(항목별 거래실적^j × 가중치^j)

항 목	가중치 ⁴⁾	산 식
현물환 양방향 거래실적	15%	$\frac{(\text{Min}[\text{매수액}_i, \text{매도액}_i] - \text{조정값}_i) \times 2}{\text{매수액}_i + \text{매도액}_i}$
현물환 호가거래 실적	45%	$\frac{(\text{호가매수액}_i + \text{호가매도액}_i) - \text{조정값}_i \times 2}{(\text{총호가매수액} + \text{총호가매도액})}$
외환스왑 거래실적 ⁵⁾	40%	$\frac{(\text{매수액}_i \times \text{만기가중치}) + (\text{매도액}_i \times \text{만기가중치})}{\text{총매수액} + \text{총매도액}} \times \text{만기가중치}$ ' =일수x365/91

- 주: 1) 외국환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금융기관점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에 상응하는 제재 등을 받거나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은행 검사 등에서 지적을 받은 경우에는 국제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점을 차감할 수 있음
- 2) 산정의 대상이 되는 거래 중에서 일정 시간 내에 동일한 환율로 매수거래와 매도거래를 반복한 경우에는 국제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액, 매도액에서 제외(산식에서 '조정값'으로 표시)
- 3) 각 항목은 외환시장 개장일별로 산정하고, 이를 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함. i는 평가대상 외국환은행, j는 각 평가항목을 의미
- 4) 한국시간 09시~18시에 체결된 거래는 가중치의 6분의 1, 한국시간 18시~22시에 체결된 거래는 가중치의 6분의 2, 한국시간 22시~익일 02시에 체결된 거래는 가중치의 6분의 3을 적용하여 각각 평가한다.
- 5) 총매수액, 총매도액은 만기가중치가 적용된 금액 기준

신고등의 신청시 제출서류

항 목	항 목 별 제 출 서 류
1. 허가·신고수리	<p><공통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사유서 2. 당해 거래 입증서류 3. 거래당사자의 실제 확인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 첨부) 4. 서약서 5. 그 밖에 한국은행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가. 금융제재대상자와의 지급등에 대한 허가(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 제3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의 금융제재대상자 관련 지급등 허가 신청서) (신청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별첨1> 「지급등 허가 신청내역 개요」를 첨부) 2. 재원증빙서류 3. 자본거래시 재원 등에 대한 확인서 <별첨2> : 자본거래에 따른 지급등 허가 신청시 수수하고자 하는 자금이 대량살상무기(WMD) 및 테러지원자금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류 4. 그 밖에 해당 거래를 입증하는 서류
나.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등에 따른 신고수리 (규정 제9-39조제4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서(규정 별지 제9-12호 서식) 2. 부동산 가격 및 실제 확인서류 3. 신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 납세증명서 4. 취득자금 재원 확인서류 5. 부동산 취득의 실사용목적 적합 여부 입증서류
다. <삭 제>	<삭 제>
라. 해외지점의 제한된 영업활동 신고수리 (규정 제9-22조제1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의 공통서식 I) 2. 해외지점의 재무상태 관련 서류 3. 제한된 영업활동의 불가피성 입증서류

항 목	항 목 별 제 출 서 류
<p>2. 신고</p> <p>가. <삭 제></p> <p>나. 상계에 의한 지급등 방 법 신고 (규정 제5-4조 제3항)</p> <p>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 는 기간을 초과하는 지 급등 방법 신고 (규정 제5-8조제1항)</p> <p>라. 제3자 지급등에 의한 지급 등 방법 신고 (규정 제 5-10조제1항)</p> <p>마.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 하는 지급등 방법 신고 (규 정 제5-11조제3항, 제7-3조 제2항)</p> <p>바. 자금통합관리에 따른 자 본거래 신고 (규정 제 7-46조제2항)</p> <p>사. 국내 및 해외 예금, 신탁 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신 고 (규정 제7-6조제2항, 제7-11조제3항)</p>	<p><공통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사유서 2. 거래당사자의 실체 확인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 임장 첨부) 3. 서약서 4. 그 밖에 한국은행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6.29. <삭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서(규정 별지 제5-1호 서식) 2. 다자간 상계의 경우 참여기업 목록 3. 상계대상 채권·채무 입증서류 4. 해당 지급등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서(규정 별지 제5-1호 서식) 2. 해당 지급등 입증서류 3. 불가피한 사유로 사후신고하는 경우 당해 불가피성을 입 증하는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서(규정 별지 제5-1호 서식) 2. 제3자 지급등 대상 채권·채무 확인서류 3. 해당 지급등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서 4. 제3자 지급등의 사유에 대한 입증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서(규정 별지 제5-1호 서식) 2. 해당 지급등 대상 채무 입증서류 3. 은행 송금이 불가능한 이유가 명시된 입증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의 공통서식 II) 2. 참여법인목록 등 참여법인 관련 서류 3. 자금통합관리계약서(안) 4. 채무제표 등 대출 및 차입 신청한도 관련 서류 5. 자금소요계획서류(대출, 차입 등 예상내역 기재) 6. 법인의 경우 이사회 결의서 또는 내부품의문서 7.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신청서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 행을 경유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서(규정 별지 제7-1호 서식) 2. 예금(신탁)거래 계약서(예치기간 및 금액 등 명시) 3. 신고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4. 재원증빙서류 5. 법인의 경우 이사회 결의서 또는 내부품의문서

항 목	항 목 별 제 출 서 류
<p>아. 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 및 외화증권 발행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 (규정 제7-14조제4항, 제7-22조제2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서(규정 별지 제7-2호 또는 제7-5호 서식) 2. 대주가 개인일 경우 비거주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3. 금전대차 계약서(증권발행계획서)(안) 4.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신청서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 경우 필 5. 거주자의 보증, 담보제공시 : 외국환은행 거래신청서 및 담보제공계약서(근질권설정서), 보증계약서, 대출의향서(LOI), 담보물 입증서류 등 관련서류
<p>자.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 및 원화 대출거래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 (규정 제2-6조제1항, 4항, 5항, 제7-16조제1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서(규정 별지 제7-2호 서식) 2. 차주가 개인일 경우 비거주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3. 금전대차 계약서(안) 4.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 제공시 : 외국환은행 거래신청서 및 담보제공계약서(근질권설정서), 보증계약서, 대출의향서(LOI), 담보물 입증서류 등 관련서류 5. 재원증빙서류 6. 법인의 경우 이사회 결의서 또는 내부품의문서
<p>차.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간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 (규정 제2-8조, 제7-19조, 제7-46조제2항)</p>	<p>[보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서(규정 별지 제7-3호 서식) 2. 보증계약서(안) 3. 피보증채무 입증서류 4.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채권 회수방안 5. 재원증빙서류 6. 법인의 경우 이사회 결의서 또는 내부품의문서 7.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에 보증을 의뢰하는 경우 : 지급보증약정서, 은행보증 증서, 담보물 입증서류 등 관련서류
	<p>[담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서(규정 별지 제7-3호 서식) 2. 담보제공계약서(안) 3. 피담보채무 입증서류 4. 담보물 입증서류 5. 법인의 경우 이사회 결의서 또는 내부품의문서

항 목	항 목 별 제 출 서 류
<p>카. 거주자간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대외지급수단,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규정 제2-2조제3항, 제2-3조제1항, 제7-20조제2항, 제7-21조제3항, 제9-43조제2항)</p>	<p>[대외지급수단 매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서(규정 별지 제7-4호 서식) 2. 신고인이 비거주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3. 채납여부 및 신용불량여부 확인 : 납세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4. 예금잔액을 증명하는 서류 5. 재원증빙서류 <p>[채권매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서(규정 별지 제7-4호 서식) 2. 채권매매계약서(안) 3. 채권양도 대상 원인계약서
<p>타.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취득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규정 제7-31조제2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서(규정 별지 제7-6호 서식) 2. 증권취득 계약서(안) 3. 재원증빙서류 4. 법인의 경우 이사회 결의서 또는 내부품의문서 5. 보유증권 교환방식에 의한 경우 교환가격의 적정성 입증서류 6. 투자개요서(〈별지 제3호 서식〉 제1-6호)
<p>파. 비거주자의 거주자로부터 증권의 취득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규정 제7-32조제3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서(규정 별지 제7-6호 서식) 2. 증권취득 계약서(안)
<p>하.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규정 제7-40조제2항)</p>	<p>[공통 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서(규정 별지 제7-7호 서식) 2. 파생상품계약서(안) 3. 재원증빙서류 4. 법인의 경우 이사회 결의서 또는 내부품의문서

항 목	항 목 별 제 출 서 류
<p>거.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등에 대한 신고(규정 제9-42조제3항)</p> <p>너.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기타 자본거래 신고(규정 제7-46조제2항)</p>	<p>[추가 서류]</p> <p>(통화파생상품거래-손실반영 거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존 파생상품거래 계약서 2. 해당 파생상품거래의 필요성 및 가격적정성 입증서류 3. 현재까지의 손실액 규모 4. 실수요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p>(통화파생상품거래-일반 선물환거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수요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p>(파생상품거래- 상품, 신용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격적정성 입증서류 2. 실수요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p>(파생상품거래- 주주간 옵션보유거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 자본거래 입증서류(주주간 옵션의 경우 주식인수계약서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서(규정 별지 제9-12호 서식) 2. 부동산 취득 관련 계약서(안) 3. 부동산 가격 및 실체 확인 서류 4. 재원증빙서류 <p>[공통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서(규정 별지 제7-8호, 제7-9호 서식외) 2. 자본거래 계약서(안) 3. 재원증빙서류 4. 법인의 경우 이사회 결의서 또는 내부품의문서 <p>[추가서류]</p> <p>(증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증자가 개인일 경우 비거주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2. 체납여부 및 신용불량여부 확인 : 증여자의 납세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3. 예금잔액을 증명하는 서류 <p>(사적화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해대상 원인거래 입증서류 2. 가액적정성 입증서류 <p>(조합유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 개요 및 타당성 입증서류 <p>(임대차 및 사용대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 물건 입증서류(가격 확인증빙 포함)

항 목	항 목 별 제 출 서 류
<p>더. 비거주자와 다른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자본거래 신고 (규정 제7-48조제2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서(규정 별지 제7-8호, 제7-9호 서식외) 2. 자본거래 계약서(안) 3. 재원증빙서류 4. 법인의 경우 이사회 결의서 또는 내부품의문서 5. 그 밖의 원인거래 입증서류
<p>러. 거주자의 역외금융회사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 (규정 제9-15조의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서(규정 별지 제9-2호 서식) 2. 투자목적 확인서류 3. 투자비율을 명시한 투자계약서(안) 4. 현지 설립절차가 별도로 필요한 경우의 입증서류 5. 역외금융회사 운용관련 입증서류 6. 투자자 및 역외금융회사의 최근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향후 예상 수지 내역 8. 법인의 경우 이사회 결의서 또는 내부품의문서

<별지 제2호 서식> 보고서

보 고 서

가. 외국환거래 현황 관련 보고서

보고서 번호	구분	보 고 서 명	보고자
1-1	월보	증권대차현황	해당거래당사자
1-2	월보	외환증거금거래실적	외국환은행
1-3	월보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한 외국인의 국내채권 거래현황	국제예탁결제기구
1-4	월보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한 외국인의 국내채권 보유현황	국제예탁결제기구
1-5	분기보	역외금융회사 설립 및 운영 현황	역외금융회사 투자자
1-6	분기보	신용카드 등의 사용실적 보고서	한국여신금융협회
1-7	분기보	여행자카드(VTM) 사용 실적 보고서	여행자카드 발행인, 판매인
1-8	분기보	내국통화 수출입 실적보고서	외국환은행
1-9	분기보	거주자의 자금통합관리 운영현황	자금통합관리 신고인
1-10	연보	해외예금 입금보고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1-11	연보	해외예금 및 신탁 잔액현황	지정거래외국환은행
1-12	수시	신용파생금융거래 내역 보고서	외국환은행
1-13	수시	역외금융회사 투자금 회수 내역 보고서	역외금융회사 투자자

나. 부동산 취득 등 관련 보고서

보고서 번호	구분	보 고 서 명	보고자
2-1	수시(취득시)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부동산 취득자
2-2	수시(처분시)	해외부동산처분보고서	부동산 취득자

다. 해외지사 등 기타 보고서

보고서 번호	구분	보 고 서 명	보고자
3-1	분기보	해외지점 영업기금 지급 및 사용내역 보고서	해외지점 설치자
3-2	연보	해외 학교·병원 자금운영 현황	설립·운영자

라. 외국환중개회사 보고서

보고서 번호	구분	보 고 서 명	보고자
4-1	일보	외환매매 및 외화자금 거래중개 일보	외국환중개회사
4-2	수시	외국환중개거래 수수료 결정내용 보고	외국환중개회사

<1-1>

업무종류구분코드		작성기준일	
보고서종류		보고주기	월보
작성기관	증권대차자		
	소 속	직책	성 명
작성자	은행 부(점)		
확인자	은행 부(점)		

증권대차현황
(년 월)

1. 증권대차현황

(억원)

증권 대차자	증권 대여일	대 차 대 상 증 권					증권대여자	대차기간 ²⁾
		증권종류 ¹⁾	증권명	수량(A)	대차단가 (B)	대차가액 (C=A*B)		

- 주 : 1) 1. 주식(출자지분 포함) 2. 국채, 지방채, 사채
 3. 수익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유동화증권 5. 기타
 2) 1. 대차기간 만료전의 경우 증권대차계약상의 대차기간
 2. 대차기간 만료 후 실제 대차기간

2. 증권대차 잔액

(억원)

증권 대차자	증권 대여자	증권대차현황		전월말 잔액 ¹⁾	금월말 잔액
		대차금액	상환금액		

주 : 1) 최초 보고시에 전월말 잔액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공란

* 이 보고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45조제2항에 의한 보고로서 최초 보고시에는 초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이후 변동내역은 익월 10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1-2>

업무종류구분코드		작성기준일	
보고서종류		보고주기	월보
작성기관	외국환은행		
	소 속	직책	성 명
작성자	은행 부(점)		
확인자	은행 부(점)		

외환증거금거래 실적

1. 외환증거금거래 내역

(천미달러)

거래대상 ¹⁾	거 래 금 액							
	매 입 ²⁾				매 도 ²⁾			
	신규매입		일일 미결제약정 누계		신규매도		일일 미결제약정 누계	
	수량 ³⁾	금액 ⁴⁾	수량 ³⁾	금액 ⁴⁾	수량 ³⁾	금액 ⁴⁾	수량 ³⁾	금액 ⁴⁾

2. 월말 미결제약정 현황

(천미달러)

거래대상 ¹⁾	전월말 미결제약정				당월말 미결제약정			
	매 입 ²⁾		매 도 ²⁾		매 입 ²⁾		매 도 ²⁾	
	수량 ³⁾	금액 ⁴⁾	수량 ³⁾	금액 ⁴⁾	수량 ³⁾	금액 ⁴⁾	수량 ³⁾	금액 ⁴⁾

3. 증거금 잔액

(백만원)

거래대상 ¹⁾	전월말 증거금 잔액		월중 증거금 변동		당월말 증거금 잔액	
	계좌수	금액	입금	출금	계좌수	금액

<작성요령>

- 1) 거래통화별로 구분하여 기재(예: 원/달러거래는 “원/달러”, 달러/엔거래는 “달러/엔” 등으로 기재)
 - 2) 매입/매도는 원화/외국통화매매시는 외국통화를 기준으로, 외국통화간매매시는 국제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기준통화(base currency)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외국통화(기준통화) 편도거래를 기재(예: 유로매입/달러매도의 경우 매입으로 기재)
 - 3) 수량은 최소계약단위기준 수량을 기재
 - 4) 금액은 최소계약단위 기준수량 x 최소계약단위 단위당 거래액 x 거래환율(다만 미결제약정의 경우 일일청산가격 적용)
 - 5) 환율적용은 미달러화이외의 기타통화표시거래의 경우 당해통화의 대미화 환산율(당해통화의 재정 환율(원화표시) / 미화의 매매기준율(원화표시))을 적용
- * 이 보고는 「외국환거래규정」 제2-4조의2제3항에 의한 보고로서 제출시한은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1-3>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한 외국인의 국내채권 거래현황

(년 월중)

수신 : 한국은행 국제국장

참조 : 자본이동분석팀장

국제예탁 결제 기구명	매매 (체결) 일자 ¹⁾	결제 일자 1), 2)	국내외 구분 ³⁾	매매 구분 ⁴⁾	채권 종류 구분 ⁵⁾	종목명 ⁶⁾	종목 코드 ⁷⁾	액면 금액 (원)	결제 통화 ⁸⁾	결제 금액 ⁹⁾	투자자정보				
											적격외국금융기관명칭 ¹⁰⁾	투자자명	고유번호	거주지국 ¹¹⁾	

- 주 : 1) 'YYYYMMDD' 형태로 기재(예 : 20080102)
 2) 채권매매대금의 결제일자
 3) 1: 국내, 2: 국외 - 국제예탁결제기구의 계좌를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 상호간의 거래
 4) 1 : 매입, 2 : 매도, 3 : 만기상환, 7 : 기타취득, 8 : 기타처분
 5) 11 : 국고채권, 12 : 국민주택1종채권, 15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6 : 재정증권, 30 : 기타 국채, 41 : 통화안정증권
 6) 채권명을 기재(예 : 국고0525-2703)
 7) KR표준코드를 기재(예 : KR1035037T34)
 8) ISO 4217 코드를 기재(예 : KRW, USD, EUR, JPY, GBP 등)
 9)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결제금액은 상장채권의 실제매매비용으로 취득/처분에 따른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외)
 10) 「소득세법」 제119조의 2 제2항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2 제2항에 따른 기관의 명칭을 기재
 11) ISO 3166-1 코드를 기재(예 : KR, US, JP, GB 등)

* 이 보고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39조제4항에 의한 보고로 제출시한은 익월 10일까지입니다.

<1-4>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한 외국인의 국내채권 보유현황
(년 월말 현재)

수신 : 한국은행 국제국장

참조 : 자본이동분석팀장

국제예탁결제기구명	채권종류구분 ¹⁾	종목명 ²⁾	종목코드 ³⁾	보유잔액(원) ⁴⁾	투자자정보	
					투자자명	거주지국 ⁵⁾

- 주 : 1) 11 : 국고채권, 12 : 국민주택1종채권, 15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6 : 재정증권, 30 : 기타 국채, 41 : 통화안정증권
2) 채권명을 기재(예 : 국고0525-2703)
3) KR표준코드를 기재(예 : KR1035037T34)
4) 액면금액 기준
5) ISO 3166-1 코드를 기재(예 : KR, US, GB, JP 등)

* 이 보고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39조제4항에 의한 보고로 제출시한은 익월 10일까지입니다.

<1-5>

역외금융회사 설립 및 운영현황

(분기중)

가. 역외금융회사 관련 총 Exposure 현황

금융기관	_____	보고기준일	_____	전화번호	_____
작성자 소속	_____	작성자 직위	_____	작성자 성명	_____
확인자 소속	_____	확인자 직위	_____	확인자 성명	_____

1) 출자 현황

(단위 : 천미달러)

역외금융회사명	출자금(A) =B-C	총누계 출자액(B)	회수금액		출자금의 NAV(E) =A+F	평가손익 (F) =E-A	청산손익	비고
			원금회수 (C)	이익회수 (D)				
합 계								

2) 신용공여 현황

(가) 대출, 지급보증(LOC포함) 등 여신

(단위 : 천미달러, %)

역외금융회사명	여신형태	여신금액 (A)	건전성 분류	GAV/ 부채액	건전성 분류 근거	충당금 적립액(B)	적립비율 =B/A
합 계							

(나) FRN 등 유가증권 매입

(단위 : 천미달러, %)

역외금융회사명	유가증권 종류	평가전 장부가액	유가증권 평가액	평가손익 =B-A	건전성 분류	GAV/ 부채액	건전성 분류 근거	보유목적 분류
합 계								

3) 분기중 역외금융회사 변동현황

설립 등 신규투자 내역			청산 등 투자회수 내역		
역외금융회사명	일자	비고	금융회사명	일자	비고

4) 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 신고수리일

역외금융회사명	한국은행 신고수리일자	기획재정부 신고수리일자	비고

나. 역외금융회사 현황

—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보고서를 첨부

<1-6>

신용카드 등의 사용실적보고서
(년 /4분기중)

수 신 : 한국은행 국제국장

참 조 : 자본이동분석팀장

카드발행업자명 : (인)

(작성자 : 전화 :)

1. 거주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해외사용실적

(단위 : 천미달러)

카드명 ¹⁾	전분기말현재 연중누계		금분기중 사용실적 ²⁾		금분기말현재 연중누계	
	사용자수	금 액	사용자수	금 액	사용자수	금 액
			월중			
			월중			
			월중			
			분 기 계			

2. 비거주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국내사용실적

(단위 : 천미달러)

카드명 ¹⁾	전분기말현재 연중누계		금분기중 사용실적 ²⁾		금분기말현재 연중누계	
	사용자수	금 액	사용자수	금 액	사용자수	금 액
			월중			
			월중			
			월중			
			분 기 계			

주 : 1) 카드명은 VISA, MASTER, DINERS, AMEX, JCB 등(이상 신용카드), Maestro, Interlink 등(이상 직불카드)으로 구분 작성

2) 사용분기의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사용분을 월별로 보고

3) 미「달러」이외의 이중통화에 대한 대미「달러」환산은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외국환중개회사의 장 이 고시하는 환산율을 적용

* 이 보고는 「외국환거래규정」 제10-6조에 의한 보고로서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제출하여 주시고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우리은행에 대한 제출시한은 익분기 둘째달 10일까지입니다.

<1-7>

업무종류구분코드		작성기준일	
보고서종류		보고주기	월
작성기관	외국환은행		
	소 속	직책	성 명
작성자	은행 부(점)		
확인자	은행 부(점)		

여행자카드(VTM) 사용 실적 보고서

(년 월중)

1. 여행자카드 판매 및 결제 실적

(단위 : 천미달러)

판매실적		결제실적		
건수	판매금액	지역	건수	결제금액
		합계		

2. 개인별 월간 1천달러 이상 여행자카드 결제 실적

(단위 : 천미달러)

성 명	카드번호	결제금액	비 고
합 계			

- <공통> 1) 여행자카드를 발행 또는 판매한 외국환은행이 작성
 2) 미「달러」이외의 이중통화에 대한 대미「달러」환산은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외국환중개회사의장이 고시하는 환산율을 적용

* 이 보고는 「외국환거래규정」 제10-6조에 의한 보고로서 제출시한은 익분기 첫째달 20일 까지입니다.

<1-9>

업무종류구분코드		작성기준일	
보고서종류		보고주기	분기보
작성기관	자금통합관리 신고자		
	소 속	직책	성 명
작성자	기관 부(팀)		
확인자	기관 부(팀)		전화번호

거주자의 자금통합관리 운영현황 보고서

(년 분기중)

1-1 해외 금융기관(해외외화예금)을 이용한 자금통합관리 운영현황

국내에서 해외로의 예치 및 처분(회수) 내역				해외 금융기관과 해외외화예금간의 예치 및 처분 내역					
일자 ¹⁾	거래내용 ³⁾	금액	USD환산금액 ⁴⁾	일자 ²⁾	거래내용 ⁵⁾	사유 ⁶⁾	금액	USD환산금액 ³⁾	거래금융기관

- 주 : 1)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한 해외외화예금으로의 송금 또는 처분(회수)일을 의미하며, 2005년7월1일의 경우 20050701로 기재
 2) 해외외화예금의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의 예치 또는 해외금융기관으로의 인출일을 의미하며, 2005년7월1일의 경우 20050701로 기재
 3) 1 : 국내에서 해외외화예금으로의 송금, 2 : 해외외화예금의 처분에 따른 국내로의 회수
 4) 미 달러 이외 이종통화의 대미달러 환산은 보고서 작성기준일(매분기말) 현재 외국환중개회사의 장이 고시하는 환산율을 적용
 5) 1 :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해외외화예금계좌로의 예치,
 2 : 해외 금융기관으로의 해외외화예금계좌 처분
 6) 1 : 원금, 2 : 이자, 3 : 수수료 등 기타

1-2. 국내 금융기관(국내외화예금)을 이용한 자금통합관리 운영현황

국내 외화예금의 예치 및 처분				국내 금융기관과 국내 외화예금간의 예치 및 처분 내역					
일자 ¹⁾	거래내용 ³⁾	금액	USD환산금액 ⁴⁾	일자 ²⁾	거래내용 ⁵⁾	사유 ⁶⁾	금액	USD환산금액 ³⁾	거래금융기관

- 주 : 1) 국내 외화예금으로의 예치 또는 인출일을 의미하며, 2005년 7월 1일의 경우 20050701로 기재
 2) 국내 외화예금의 국내 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예치 또는 국내 외국환은행으로의 인출일을 의미하며, 2005년 7월 1일의 경우 20050701로 기재
 3) 1 : 국내 외화예금으로의 예치, 2 : 국내 외화예금의 인출
 4) 미 달러 이외 이중통화의 대미달러 환산은 보고서 작성기준일(매분기말) 현재 외국환중개회사의 장이 고시하는 환산율을 적용
 5) 1 :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외화예금계좌로의 예치,
 2 : 국내 금융기관으로의 외화예금계좌 처분
 6) 1 : 원금, 2 : 이자, 3 : 수수료 등 기타

2. 본·지사간 직접 자금통합관리 운영현황

가. 분기중 거래내용

일자 ¹⁾	대주	차주	대출/차입 금액	USD환산 금액 ²⁾	일자 ¹⁾	대주	차주	회수/상환금액		USD환산금액 ²⁾	
								원금	이자	원금	이자

- 주 : 1)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 또는 영수일을 의미하며, 2005년 7월 1일의 경우 20050701로 기재
 2) 미 달러 이외 이중통화의 대미 달러 환산은 보고서 작성기준일(매분기말) 현재 외국환중개회사의 장이 고시하는 환산율을 적용

나. 분기말 대출 및 차입잔액

대주	차주	분기말 잔액 ¹⁾	USD환산금액 ²⁾	대주	차주	분기말 잔액	USD환산금액 ²⁾

주 : 1) 실제 대출 및 차입 통화 기준

2) 미 달러 이외 이중통화의 대미 달러 환산은 보고서 작성기준일(매분기말) 현재 외국환중개회사의 장이 고시하는 환산율을 적용

* 이 보고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제5항에 의한 보고로서 제출시한은 익분기 첫째달 20일까지입니다.

<1-10>

해 외 예 금 입 금 보 고 서

(년중)

상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¹⁾ 성명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작성기관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소 속	직책	성 명
작성자	은행 부(점)		
확인자	은행 부(점)		

(단위 : 천미달러)

개설인명	입금일자	예금종류 ²⁾	예금기관명	계좌번호	입금액 ³⁾	입금재원 ⁴⁾	국가명 ⁵⁾

- 주 : 1) 개인인 경우 대표자란에 성명을 기재할 것.
2) 정기예금, 보통예금(당좌예금 포함), 기타로 구분 기재할 것.
3) 미화이외의 통화로 입금할 경우에는 미화금액을 병기할 것.
4) 수출대금, 용역대금, 부동산처분대금, 외화증권처분대금, 예금(신탁)처분대금, 기타로 구분 기재할 것.
5) 예금기관 소재 국가명을 기재할 것.

외국환거래규정 제7-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한국은행총재 귀하

* 이 보고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12조에 의한 보고로서 제출시한은 다음 년도 첫째달 말일까지입니다.

<1-12>

신용파생상품거래 내역 보고서

신 용 파 생 상 품 거 래 내 역 보 고 서		
보 고 인	상호 및 대표자 성명	① (담당자 성명 :)
	주 소(소 재 지)	(전화번호 :) (E-mail :)
거 래 상 대 방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 소(소 재 지)	(전화번호 :) (E-mail :)
	업 종(직 업)	
거 래 내 용	거 래 종 류	<input type="checkbox"/> 신용연계채권(CLN) <input type="checkbox"/> 총수익교환스왑(TRS) <input type="checkbox"/> 신용스왑(CDS) <input type="checkbox"/> 신용옵션(CDO) <input type="checkbox"/> 합성담보부채권(Synthetic CDO) <input type="checkbox"/> 기타()
	거래상품의 명칭	* 거래상품의 고유명칭을 기재
	계약(명목) 금액	1. 계약통화기준 금액 : 2. 미달러화기준 환산금액 :
	거 래 일 자	
	만 기 일 자	
	거 래 목 적	<input type="checkbox"/> 위험회피목적 <input type="checkbox"/> 매매목적 <input type="checkbox"/> 보장매입 <input type="checkbox"/> 보장매도
	보장매입/보장매도 구분	* 위험회피 입장이면 보장매입, 위험인수 입장이면 보 장매도
외국환거래규정 제2-10조의2 및 제2-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한국은행총재 귀하		

210mm×297mm

- <첨부서류> 1. 신용파생상품거래 사유 설명서(A4 1매이내)
2. 신용파생상품거래 계약서

<1-13>

역외금융회사 투자금 회수 내역 보고서

역외금융회사명 :

보고기준일 :

작성자 소속 :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

확인자 소속 :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

가. 전체 투자금 회수 내역

투자자	일 자	기존 투자금액		회수금액	투자잔액		비고
		장부가액	시가평가액		장부가액	시가평가액	
합 계							

나. 투자 형태별 회수 내역

1) 출자금

투자자	일 자	기존 출자금액		회수금액	출자금액		지분율	비고
		장부가액	시가평가액		장부가액	시가평가액		
합 계								

2) 여신(대출 및 보증)

투자자	일 자	여신형태	기존 여신금액		회수금액	여신잔액		비고
			장부가액	시가평가액		장부가액	시가평가액	
합 계								

3) 유가증권(FRN, ELN 등)

투자자	일 자	증권종류	기존 투자금액		회수금액	투자잔액		비고
			장부가액	시가평가액		장부가액	시가평가액	
합 계								

다. 한국은행 신고내역

신 고 인	신고일자	신고번호	신고내용

* 이 보고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15조의2제8항에 의한 보고로서 제출시한은 투자자금 회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2-1>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작성자 : 전화 :)

1. 부동산취득자명 :

2. 취득의 상대방

가. 상호 또는 성명 :

나. 주소 또는 소재지 :

3. 부동산 취득 내용

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

(1) 부동산취득 신고수리일 및 신고수리번호 :

(2) 부동산 취득 등기일 :

나. 부동산의 내용

(1) 내역

(가) 종류 :

(나) 건 평 :

(다) 대 지 :

(2) 소재지

(3) 취득가액

(가) 건물가격 :

(나) 대지가격 :

(다) 부 대 비 :

(4) 부동산 관리자

(가) 주 소 :

(나) 성 명 :

(다) 취득자와의 관계 :

4. 기 타

5. 첨부서류

가. 등기부등본 등 취득 입증서류

나. 취득부동산 천연색 사진

다. 부대비 영수증(부동산 취득세 납부증명 포함)

라. 기 타

※ 1) 본 보고서는 부동산 취득대금 송금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2) 본 보고서와는 별도로 해외부동산을 취득(변동이 있는 경우) 및 운용(임대)할 때에는 법인세법(제121조의2) 또는 소득세법(제165조의2)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음

<2-2>

해외부동산처분보고서

(작성자 : 전화 :)

1. 부동산취득자명 :

2. 처분목적 해외부동산의 내용

가. 부동산의 명세(종류, 수량, 가격 등) :

나. 부동산의 소재지 :

3. 해외부동산 처분내용

가. 부동산 처분내용 :

(1) 처분가격 :

(2) 기타지급비용 :

(3) 국내송금가능액 :

4. 첨부서류

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 :

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

다. 기타 지급비용 명세서 :

- ※ 1) 본 보고서는 당해 부동산의 처분후 3개월 이내(다만, 부동산 처분후 3개월 이내에 처분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하는 시점에 제출할 것
- 2) 본 보고서 제출시 부동산 매각대금(국내 회수금액)에 대한 외국환은행의 외환매입증명서(송금 처 명기)를 첨부할 것
- 3) 본 보고서와는 별도로 해외부동산을 처분할 때에는 법인세법(제121조의2) 또는 소득세법(제165조의2)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음

<3-1>

해외지점 영업기금 지급 및 사용내역 보고서(분기보)
(년 분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업종	
해외지점명 및 주소			
	소 속	직책	성 명 전화번호
작성자			
확인자			

1. 해외지점 재무상황¹⁾

(단위 : 천미달러)

총자산액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 송금액 ²⁾	사업명 ³⁾	총 계약금액 ⁴⁾	매출액 ⁵⁾	영업기금 지급액 ⁶⁾ (A)	영업기금 사용액 ⁷⁾ (B)	영업기금 잔액 (A-B)	비고
		합 계						—

주 : 1) 분기말 기준

- 2) 본사가 해외지점 설치 이후 해외지점에게 지급한 누계액
- 3) 해외지점이 외국 발주처와 계약한 해외공사 등의 사업명 기술
- 4) 해외지점이 외국 발주처와 계약한 해외공사 등의 계약 총금액
- 5) 해외공사 등의 계약에 따른 해외지점의 매출 누계액
- 6) 본사가 해외지점에게 지급한 영업기금 누계액
- 7) 해외지점의 영업기금 사용 누계액
- 8) 미 달러 이외의 이종통화의 경우 해당통화금액을 병기하고 대미 달러 환산은 보고서 작성기준일(매분기말) 현재 외국환중개회사의 장외 고시하는 환산율을 적용

<3-2>

해외 학교·병원 자금운영 현황
(연도중)

1. 학교 또는 병원에 관한 사항

가. 학교 또는 병원명 :

나. 학교 또는 병원 소재지

- 주 소 :

- 전화번호 :

다. 설립·운영자 : 직성명

전화번호

라. 설립일 :

마. 취득 부동산 명세

항 목	취득일	취득원가	규 모	용 도	비 고
토 지					
건 물					
기 타					
계					

2. 자금운영에 관한 사항

가. 국외유출금액 (천미달러)

나. 국내입금금액 (천미달러)

다. 자금운영 내역(연중 운영내용을 개괄적으로 기술할 것)

3. 첨부서류 : 자금운영계획 및 결산보고서 1부. 끝.

* 이 보고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제4항에 의한 보고로서 제출시한은 익년도 첫째달 20일
까지입니다.

2. 기관별 외환거래내역

2-1. 장내거래¹⁾

(단위 : 백만미달러, 원)

매입기관	매도기관	금 액	매매율	비 고 ²⁾

주 : 1) 거래별(현물환, 선물환 및 SWAP거래) 및 기일물별로 구분 작성
2) 해당거래의 결제일 표시

2-2. 장외거래¹⁾

(단위 : 백만미달러, 원)

매입기관	매도기관	금 액	매매율	비 고 ²⁾

주 : 1) 「은행간 외환거래지침」의 장내거래 원칙에 의거 외국환중개회사의 장 앞으로 보고한 장
외거래로서 거래별(현물환, 선물환 및 SWAP거래)로 구분 작성
2) 해당거래의 결제일 표시

II. 외화자금거래 중개¹⁾

구 분	대여기관	차입기관	거래종류	금리(%)	금 액	적수금액	비 고
일일물 ²⁾							
주일물 ³⁾							
월일물 ⁴⁾							
1년물							
합 계							

- 주 : 1) 외화자금거래 중개통화별(미달러화, 일본엔화, 독일 마르크화, 영국 파운드화)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
 2) Overnight(O/N), Tomorrow Next(T/N), Spot Next(S/N) (3종)
 3) 1주일, 2주일, 3주일 (3종)
 4)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4종)

<4-2>

외국환중개거래 수수료 결정내용 보고

문서번호

년 월 일

수신 : 한국은행총재

참조 : (외환시장팀)국제국장

제목 : 외국환중개거래 수수료 결정내용 보고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제4-4조에 의거 외국환중개거래 수수료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종 류		수수료율	기준금액	비 고
외환매매	현물환		원	백만미달러
	선물환	1개월 이내	원	"
		1개월 초과	원	"
	스왑	1주일 이내	원	"
		1개월 이내	원	"
		1개월 초과	원	"
외화자금		%	거래금액 (적수)	

* 외국환중개회사에서 상기 보고양식 조정 가능

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서식등

서 식 등

1. 허가 등

- 1-1. 신청서 (공통서식 I)
- 1-2. 신청서 (금융제재대상자 관련 지급등 허가신청서)
- 1-3. 신고서 (공통서식 II)
- 1-4. 변경신청서
- 1-5. 접수증
- 1-6. 투자개요서
- 1-7. 서약서

2. 검사

- 제2-1호 검사 실시 명령서
- 제2-2호 확인서
- 제2-3호 질의서
- 제2-4호 검사일지
- 제2-5호 검사원 보고서
- 제2-6호 검사 결과 보고서
- 제2-7호 시정조치 결과 보고서

3. < 삭제 >

4.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서

- 4-1. 종합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서
- 4-2. 선물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서

5. < 삭제 >

6. < 삭제 >

(1-2)

금융제재대상자 관련 지급등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인	신청업체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직업)			
	거래은행	은행명 (지점명)	(전화번호)		
지급등 계좌번호					
신청내역	거래구분	<input type="checkbox"/> 지급 <input type="checkbox"/> 영수			
	거래종류	<input type="checkbox"/> 수출거래 <input type="checkbox"/> 수입거래 <input type="checkbox"/> 용역거래 <input type="checkbox"/> 자본거래			
	거래상대방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거래대상 품목 등	품목명		HS 번호	
		사용목적			
	결제방법	<input type="checkbox"/> 신용장(L/C) <input type="checkbox"/> 추심(D/P, D/A) <input type="checkbox"/> 송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통화	<input type="checkbox"/> USD <input type="checkbox"/> EUR <input type="checkbox"/> JPY <input type="checkbox"/> 기타통화()			
	지급등 금액	원금			
		이자			
기타	계약일자		만기일자		
	네고일자				
<p>「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39호, 2017.12.28)에 따른 금융제재대상자()와의 본건 지급 등을 허가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한국은행 총재 귀하</p>					
신청인 귀하 위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허가함 허가조건 :			허가번호		
			허가금액		
			유효기간		
			년 월 일		
한국은행 총재 (인)					

<첨부서류> 1. 사유서 2. 신청인 및 거래상대방의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3. 채권·채무 증빙서류 4. 수출입신고필증
 5. 「자본거래시 재원 등에 대한 확인서」<별첨 2> 6. 인감증명서
 7. 서약서 8. 기타 한국은행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신청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별첨 1>의 「지급등 허가 신청내역 개요」를 작성하여 제출

<별첨 2>

자본거래시 재원 등에 대한 확인서

한국은행 총재 귀하

본 신청서에 따라 수수하고자 하는 자금이 대량살상무기 (WMD) 및 테러 지원자금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상기 확인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_____ 대표 (인)

(1-3)

신 고 서 (공통서식 II)

() 신 고 서		처리기간
신 청 인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직 업)	
신 고 내 역		
외국환거래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한국은행총재 귀하		

(1-4)

(_____) 변경 신청서

년 월 일

한국은행총재 귀하

신청인 상호 및 대표자 성명 _____ (인)

주 소 또는 소 재 지 _____

전 화 번 호 _____

아래와 같이 (_____) 변경을 신청합니다.

1. 기 인허가 사항 가. 인허가번호 _____ 나. 일자 _____ 다. 금 액 _____
2. 변경내용 가. 변경전 : 나. 변경후 :
3. 변경사유(구체적으로 기입할 것)

위의 (_____) 변경을 다음과 같이 허가함

허가번호	
허가일자	

한국은행총재

사본수신처 :

(1-5)

접 수 증

제 호

접수일시 : . . .

① 민원명	
② 민원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③ 처리예정기간	
④ 처리주무부서	
⑤ 안내사항	

민원접수자 : (서명)
(전화 :)

한국은행 (국, 본부)

(1-6)

투 자 개 요 서

1. 투자자

2. 투자액

가. 해외투자금액

- 금번 투자금액
- 기투자금액

나. 자기자본

다. 자기자본대비 해외투자금액 비율

3. 투자대상회사 자본금 현황

구 분	총발행한도*	발 행 주식수 (비율)	액면가액 (US\$)	발행단가 (US\$)	납입금액 (US\$)
보통주 우선주 A B C					
소 계					
금번발행					
당사취득분					
합 계 보통주전환가정					

* 수권주식총수

가.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요건

나. 추가 주식발행시 가격 및 주식수의 제한 여부

다. 국내·외 투자자 현황

(1-7)

서약서

신고인은 ○○○(또는 ○○○의 대리인 ●●●)은 20XX.X.X일 한국은행에 ○○거래를 위한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 신고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한 후 외국환거래법, 동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사실대로 신고하였습니다.
-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습니다.
- 귀 행에 신고 이후 거래관계의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자료와 사후 관리 자료 및 보고서 등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 하겠습니다.

20XX.X.X

신고인 ○○○(또는 ○○○의 대리인 ●●●)(인)

2. 검사

제2-1호

검사 실시 명령서

번호 :

기관명	검 사 기 간	검 사 원
		<u>소 속</u> <u>직·성 명</u>

검사대상자에 대한 검사를 명령함.

년 월 일

한 국 은 행 총 재

확 인 서

제 목 :

확인 내용(6하원칙에 따라 기술) :

위 사 실 을 확 인 함 .

20

확 인 자
직 성 명

㉠

* 필요한 경우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의견서를 첨부하거나 지적사항의 관련자를 명시할 수 있음

제2-4호

검 사 일 지
(년 월 일)

검사대상기관 :

검사항목	검사내용	비 고

검 사 원 (인)

검사반장 (인)

4.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 신청서

4-1. 종합포지션 별도한도 인정 신청서

종합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서	
1. 상 호 (본점)	
2. 대 표 자 (본점)	
3. 소 재 지 (본점)	
4. 별도한도 신청대상	<input type="checkbox"/> 종합매입초과포지션 <input type="checkbox"/> 종합매각초과포지션
5. 별도한도 신청금액	천미달러(US천\$)
6. 별도한도 신청사유	<input type="checkbox"/> 이월이익잉여금의 환리스크 헤지 <input type="checkbox"/> 기타
7. 별도한도 신청내역	— 불 임 1
8. 별도한도 필요사유	— 불 임 2
<p>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은행장 (인)</p> <p>한국은행총재 귀하 (참조 : 국제국장)</p>	

- 첨부서류 : 1. 최근 원화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외화 대차대조표
 2. 결산보고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3. 이월이익잉여금의 환리스크헤지가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이월이익잉여금의 환리스크 헤지를 위한 외국환매입분에 대하여 별도한도 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은지점의 경우)

(붙임 1)

종합포지션 별도한도 신청내역

<별도한도 신청사유가 이월이익잉여금의 환리스크 헤지에 해당하는 경우>

(단위 : 천미달러, 일)

		월*	~	월*
자기자본 내역	· 감기금 및 제적립금			
	· 이월이익잉여금			
	· 기타			
자본금헤지 거래 현황	· 헤지거래대상 자본금			
	(헤지대상 이월이익잉여금)			
	· 자본금헤지 종합포지션			
	(이월이익잉여금헤지 종합포지션)			
	· 자본금헤지 선물환포지션			
(이월이익잉여금헤지 선물환포지션)				
종합포지션 운용현황	· 종합포지션 평잔			
	· 종합O/B포지션 발생일수			
	(90%이상 한도소진일수)			
	(80%이상 한도소진일수)			
	(70%이상 한도소진일수)			
	· 종합O/S포지션 발생일수			
	(90%이상 한도소진일수)			
	(80%이상 한도소진일수)			
(70%이상 한도소진일수)				

* 최근 12개월의 월별내역

<별도한도 신청사유가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단위 : 천미달러, 일)

		월*	~	월*
자 기 자 본				
종합포지션	· 종합포지션 평잔			
운용현황	· 종합O/B포지션 발생일수			
	(90%이상 한도소진일수)			
	(80%이상 한도소진일수)			
	(70%이상 한도소진일수)			
	· 종합O/S포지션 발생일수			
	(90%이상 한도소진일수)			
	(80%이상 한도소진일수)			
	(70%이상 한도소진일수)			
종합포지션	· 전월말 종합포지션			
변동내역	┌ 월중 대고객 매입			
	└ 월중 대고객 매각			
	┌ 월중 은행간 매입			
	└ 월중 은행간 매각			
	· 금월중 종합포지션 변동분			

* 최근 12개월의 월별내역

(붙임 2)

종합포지션 별도한도 필요사유

(붙임 1)

선물환포지션 별도한도 신청내역

<별도한도 신청사유가 이월이익잉여금의 환리스크 헤지에 해당하는 경우>

(단위 : 천미달러, 일)

		월*	~	월*
자기자본 내역	· 갑기금 및 제적립금			
	· 이월이익잉여금			
	· 기타			
자본금헤지 거래 현황	· 헤지거래대상 자본금			
	(헤지대상 이월이익잉여금)			
	· 자본금헤지 종합포지션			
	(이월이익잉여금헤지 종합포지션)			
	· 자본금헤지 선물환포지션			
(이월이익잉여금헤지 선물환포지션)				
선물환포지션 운용현황	· 선물환포지션 평잔			
	· 선물환O/B포지션 발생일수			
	(90%이상 한도소진일수)			
	(80%이상 한도소진일수)			
	(70%이상 한도소진일수)			
	· 선물환O/S포지션 발생일수			
	(90%이상 한도소진일수)			
	(80%이상 한도소진일수)			
	(70%이상 한도소진일수)			

* 최근 12개월의 월별내역

<별도한도 신청사유가 제도 도입전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단위 : 천미달러, 일)

		금액
자 기 자 본		
제도 도입전 거래 현황	- 제도 도입전 거래 매입액	
	- 제도 도입전 거래 매각액	
제도 도입전 거래 만기현황 ¹⁾	- 신청대상 제도 도입전거래 매입총액	
	· 1개월이내 만기도래 예정액	
	· 1개월초과 3개월이내 만기도래 예정액	
	· 3개월초과 6개월이내 만기도래 예정액	
	· 6개월초과 1년이내 만기도래 예정액	
	· 1년초과 2년이내 만기도래 예정액	
	· 2년초과후 만기도래 예정액	
	- 신청대상 제도 도입전거래 매각총액	
	· 1개월이내 만기도래 예정액	
	· 1개월초과 3개월이내 만기도래 예정액	
	· 3개월초과 6개월이내 만기도래 예정액	
	· 6개월초과 1년이내 만기도래 예정액	
	· 1년초과 2년이내 만기도래 예정액	
	· 2년초과후 만기도래 예정액	
선물환포지션 거래 내역	· 전월말 선물환포지션	
	· 금월중 선물환포지션 변동분	

주 : 1) 신청월 말일 기준

<별도한도 신청사유가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단위 : 천미달러, 일)

		월*	~	월*
자 기 자 본				
선물환포지션 운용현황	· 선물환포지션 평잔			
	· 선물환O/B포지션 발생일수			
	(90%이상 한도소진일수)			
	(80%이상 한도소진일수)			
	(70%이상 한도소진일수)			
	· 선물환O/S포지션 발생일수			
	(90%이상 한도소진일수)			
	(80%이상 한도소진일수)			
(70%이상 한도소진일수)				
선물환포지션	· 전월말 선물환포지션			
변동내역	┌ 월중 대고객 매입			
	└ 월중 대고객 매각			
	┌ 월중 은행간 매입			
	└ 월중 은행간 매각			
	· 금월중 선물환포지션 변동분			

* 최근 12개월의 월별내역

(붙임 2)

선물환포지선 별도한도 필요사유

